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하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하.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 을 입식한 경우	법 제60조 제1항제4의2호	100	200	500
--	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별표 3 제2호더목부터 모목까지 및 보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
보목까지 및 소목부터 호목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520